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5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□ 개정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거창군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,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때의 신고와, 시장사용권 양도.전대시 허가 사항을 폐지 하고

○ 이와 관련하여 시장사용권을 허가없이 양도·전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

□ 개정근거

○ 행정규제기본법

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고)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사용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한 때 2. 시장 사용권을 상속 또는 양도받았을 때	제3조 <삭 제>
제4조(사용권 양도 금지) 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	제4조 <삭 제>
제5조(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) .... 1~3 (생략) 4. 제4조에 위반하였을 때 5~8 (생략)	제5조(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) .... 1~3 (현행과 같음) 4. <삭 제> 5~8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,000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 2. 시장 사용권을 군수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자 3. 시장을 오손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 자. ② (생략)	제18조(과태료) ① .... 1. .... 2. <삭 제> 3. .... ② (현행과 같음)